

(중략)

< 범리검토 결과 >

○ 주한미군 법집행절차 규정 190-50, 1-11, B (교통집행 책임은 한국측 당국에만 있다. 이는 순찰, 차량정차, 구두경고 또는 한국 교통법을 낭독하는 것을 포함 한다)

▶ 따라서, 주차관련 단속 및 이동조치는 영외 순찰 헌병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차이동조치가 필요하면 한국경찰에 연락해 한국경찰이 조치해야 한다.

○ 주한미군 법집행절차 규정 190-50, 1-11, C (영외순찰활동 중에 주한미군 요원은 군인복무규율의 효력 하에 있고, 해당 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가 있는 자를 억류할 수 있다)

▶ 따라서, 차량을 이동 조치했고, 별다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의 체포 행위는 개인적인 폭행 및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한다.

○ 주한미군 법집행절차 규정 190-50, 제2장 무력사용 2-1 평시 e (3), (4)

▶ 제3항

Personnel who are not subject to the UCMJ(e.g., Department of State employees, family members, DoD civilian employees, local nations, and third country nationals) will not be placed in handcuffs or plastic restrains unless doing so is necessary in order to detain them for the purposes of preventing injury to themselves, LE personnel or others or when protecting DoD resources vital to nation security as defined in Paragraph 2-2b.

(수갑사용의 요건 관련 헌병 또는 타인의 부상을 방지하거나 국방부 자원 보호 외 수갑 등 장구 사용은 제한)

▶ 제4항

Except in the vicinity of vital U.S. property or in accordance with agreements between U.S. and ROK authorities, USFK LE personnel have no

jurisdiction over persons not subject to the UCMJ off-post and, accordingly, cannot exercise the same level of authority as is exercised over U.S. military personnel. Therefore, except when protecting DoD resources vital to national security (as defined in paragraph 2-2b) in times of increased security, handcuffs or plastic restrains will not be used off-post on nonmilitary persons.

(헌병의 사법권 범위 및 수갑사용의 객체관련 기지 영의 민간인에 대한 사법 권한이 없으며 국방부 자산 보호 목적 외 민간인에 대한 수갑 등 장구 사용은 불가)

▶ 미군 측은 미헌병 및 피해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조항을 미헌병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상황이 부상이 발생하거나 부상에 이를 만큼의 폭력행사는 없었다는 것은 목격자들 진술, 다수의 CCTV 동영상, 피해자 진술에 확인된다. 따라서, 부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한 것이 아닌 미헌병들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뤄진 행위로 판단된다.

○ 한미행정협정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0항 (미국 시설과 공간 밖에서 군 당국은 “오직 한국경찰과 합의 하에 미군의 규율과 명령을 유지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할 수 있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 따라서, 한국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신병을 즉시 인계하지 않은 것도 위반이다.

○ 제51헌병대 자체 운영규범 31-101(SFS)

헌병은 주한미군에게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한국민을 구금할수도 있다. 헌병은 오직 심각한 부상이나 신체적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 한국인을 속박(수갑)할 수 있다.

▶ USAG 험프리스기지 헌병대 자문 결과, 위 주한 미공군 제51헌병대 자체 운영 규범 31-10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부상이나 신체적 손상”의 정도는 의료기관의 응급 처치가 필요한 수준의 부상과 위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진술 정취하였다. 피해자들이 본 건 피의자들에게 응급실에 후송될 정도의 상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운 행위는 명백히 체포 행위에 해당한다.

< 경찰의견 >

○ 신장쇼핑몰에서 미헌병들의 주차이동 요구 행위가 관행이 되었다는 미측 자체조사결과를 차제에 검토하더라도 피스뮤직 매장 내?외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미헌병들의 행위는 공무를 이탈한 행위로 판단되며,

○ 미측 자체조사결과는 미헌병 자신들과 피해자, 또 다른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수갑 사용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미측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중, 수갑사용 부분)

While the jurisdiction of Town Patrol officers is limited to members of the U.S. Armed Forces, civilian component, or their dependents, U.S. Forces Korea Regulation 190-50 states that the Town Patrol may handcuff Korean nations when necessary to prevent injury to themselves, Law Enforcement personnel or others, or when protecting DoD resources vital to national security. The 51 SFS OI further states that Town Patrol members will only restrain(handcuff) Korean nationals when required to protect him or herself from possible serious injury or bodily harm.

순찰단원들의 관할권은 미군, 군속, 또는 그 가족들에게 제한되어 있으나, 주한미군 규정 제 190-50호에서 명시된 바, 순찰단원 본인들, 법집행 인원 또는 다른 이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미국방부 자원을 보호할 때, 순찰단은 한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울수 있다. 또한 제51 SFS 운영지침은 순찰단원들이 있을 수 있는 심각한 부상 또는 신체적 상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한국인들을 속박(수갑을 채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수의 CCTV에 명백히 촬영되어 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똑같이 진술하고 있다. 미헌병들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한 폭력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3명에게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고, 부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한 것이 아닌 아미헌병들의 사적 감정이 앞선 체포행위로 판단되며,

○ 미측은 미헌병과 한국경찰 간의 언어장벽으로 인해 수갑 제거와 신병인계가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을 흥분한 군중으로부터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한국경찰에 인계하려고 했다는 미헌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즉시 인계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한국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차 양○○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닌 사적 감정에 의한 체포행위로 판단된다.

○ 본 건 피의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으로 기소 의견임..